

공고 제 1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1년 02월 08일

대야면장 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길	김 *길 1959-04-06	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03-12